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운영세칙

제정 2020. 06. 26.
개정 2023. 01. 19.

제1조(목적) 이 운영세칙은 「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 · 운영 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에 의거 간호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금 수주
2.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
3. 국내 및 국제 학술행사 개최
4.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등 개최
5. 학술지 및 간행물의 발간
6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3조(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, 소장은 부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야 하며, 협약 등에서 정한 경우는 협약 등을 따른다.
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소를 대표한다.

③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.

제4조(조직 및 기능) ① 연구소에 학술부, 연구부, 기획·홍보부를 둔다.

② 각 부에 부장을 두고, 부장은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 부의 업무는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.

1. 학술부: 국내 및 국제 학술행사, 세미나/워크숍 개최 등
2. 연구부: 연구사업 기획 및 연구기금 수주 등
3. 기획·홍보부: 학술지(글로벌 건강과 간호)와 간행물 발간, 홈페이지 관리 등
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

수 있다.

② 겸임연구원은 간호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을 당연직으로 하고, 간호대학 이외의 전임교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(박사과정이 포함된 통합 또는 연계과정 수료자 포함)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 또는 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·박사과정 재학생(수료자 포함)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소장이 임명한다.

⑥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되며, 간호대학 학장, 부학장, 학술부장, 연구부장, 기획·홍보부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외의 위원은 겸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과 운영
2. 예산 및 결산 심의
3.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
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, 연구계약 체결
5. 각 부의 업무 분장
6. 연구원의 위촉 및 임명
7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⑤ 위원회는 매년 4회 (분기별 1회) 이상 소집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간호대학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제7조(감사) ① 연구소에 감사 2명을 두며, 연구소의 회계 감사를 담당한다.

② 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8조(재정)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개발비, 각종사업비, 대학지원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재정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(기타)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　칙(2020. 6. 26. 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세칙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(2023. 01. 19. 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세칙은 결과통보일로부터 시행한다.